

창원지방법원 2021. 12. 16 선고 2021가단1002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호관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율

담당변호사 박민건, 박종현, 이재영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엄도홍

변 론 종 결 2021. 11. 1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16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(D 생) 사이에 2016. 5. 24. 체결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C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. 5. 24. 접수 제46287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A(이하 'A'이라 한다)은 C(D생)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71137호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13. 5. 31. 'C은 A에 18,855,352원 및 그 중 5,000,000원에 대하여 2012. 7. 20.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(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),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A은 2013. 4. 3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결정을 받았고,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.

다. C의 아버지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6. 12. 17. 사망하였고, E의 상속인으로는 처(2014년경 사망)와 자녀인 C, 피고가 있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. 12. 17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. 5. 24. 접수 제4628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호증,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성립된 후에 C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,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행행위 및 사해의사

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. 12. 17.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6. 5. 24.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, 1996. 12. 17.은 E의 사망일이라는 점, E 사망 당시 C은 16세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질적인 상속재산협의분할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6. 5. 24.경으로 봄이 상당하다.

그런데, 갑 제1호증의 기재, 이 법원의 김해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,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 질 무렵 C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,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/2 지분은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C이 자신의 상속분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, C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E이 사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장손인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, C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C과 떨어져 살면서 서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C의 채무초과 상태 등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,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).

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하기로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몫인 1/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. 5. 24. 접수 제462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이봉수